



## 야생동물과 관련된 기관 연락처

### • 환경오염 행위 목적 신고

- (국번없이) 128
- 휴대전화는 지역번호+128

### • 야생생물 및 서식지 안전 제보

- 환경부 : 1577-8866

### • 천연기념물 지정 야생생물 및 서식지 안전 제보

- 문화재청 : 1600-0064

### •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 불법거래, 사육 발견시

- 관할 유역(지방)환경청 자연환경과

### • 공원자원 훼손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

- 국립공원관리공단 : 1670-9201

### • 산림훼손, 임산물 불법 채취 등 단속

- 산림청 : 1588-3249

### • 전염병 발생 의심 신고

- 환경부 : 1577-8866
- 국립환경과학원 : 032-560-7114

## 부상당한 야생조류를 보았을 때, 어떻게 해야 하지요?

조난·부상 등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면 가까운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에 신속히 연락해서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.

### <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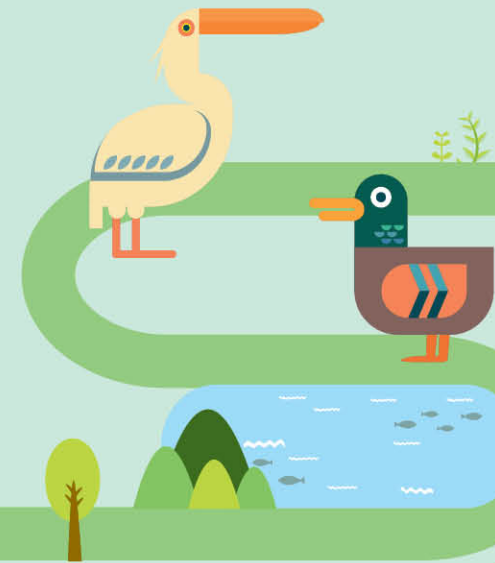
지역	소재지	연락처
서울	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	02-880-8659
부산	부산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-2	051-209-2091
대전	대전시 유성구 궁동 대학로 99	042-821-7930
울산	울산시 남구 옥동 506-3	052-256-5322
경기	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통천길 132-93	031-8008-6212
강원	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	033-250-7504
충북	충북 청주시 청원구 양청4길 45	043-216-3328
충남	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화리 1	041-334-1666
전북	전북 익산시 고봉로 79번지	063-850-0983
전남	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922-15	061-749-4800
경북	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150-44	054-840-8250
경남	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	055-754-9575
제주	제주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42	064-752-9982
인천	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3-20(솔찬공원내)	032-858-9702

## 가까운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128 환경신문고, 가까운 시·군·구 환경부서나 해당지역 관할 유역(지방)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신고 하세요.

# 야생조류에게 농약·유독물 살포는 이제 그만!

새가 날아오는 곳은 사람에게도 살기  
좋은 곳입니다.



# 야생조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& A



**Q** 조류독감(AI : Avian Influenza)으로 죽은 야생조류 보다 농약중독으로 죽은 야생조류가 더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?

**A** 2017년 한해 동안 신고 접수한 야생조류 폐사는 총 1,215건(1,971마리)입니다. 이 중 AI 바이러스 검출은 27마리로 1.37%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급성 농약중독, 충돌 등 사고사, 생태계 내 자연사로 추정됩니다. 특히 평균 20마리 이상의 야생조류 집단 폐사의 경우, 85% 이상이 농약중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**Q** 야생조류에서 농약이 왜 검출될까요?

**A** 야생조류는 물고기, 조개 등 수중생물을 잡아먹거나 과일, 벌씨 등을 섭취합니다. 식물을 먹이로 하는 경우 살충제, 제초제 등의 농약이 미량 검출될 수 있지만, 이로 인해 야생조류가 폐사하지는 않습니다. 일부 고의적으로 농약을 벌씨 등에 섞어 살포한 경우, 고농도의 농약을 섭취하게 되어 폐사하게 됩니다. 또한 상위포식자인 독수리(멸종위기종) 등이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조류를 섭취하여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

## 야생조류에게 농약, 유독물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!

야생생물을 포획·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유독물,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해서는 안됩니다.

(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, 제19조제3항)

• 위반시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.

멸종위기 야생생물	멸종위기 외 야생생물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	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(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, 제69조)

## 유독물·농약을 살포한 자나, 농약중독으로 확인·의심 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

### 신고기관

가까운 시·군·구 환경부서나 해당지역 관할 유역(지방)환경청 자연환경과에 연락합니다.



### 신고방법

일반전화, 모사전송, 방문접수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.



## 환경부에서는 야생조류 농약·유독물 살포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.

• 농약 살포한 자를 신고하였을 때 포상금

농약, 유독물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, 100만원을 지급합니다.

• 농약중독 야생동물을 신고하였을 때 포상금

농약·유독물 중독으로 확인되거나, 농약중독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, 5만원을 지급합니다

- 1 한 장소, 한 시점에 5개체 이상 농약 중독으로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지급합니다.
- 2 농약중독 진단기관으로부터 농약중독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.
- 3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 (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)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습니다.



(폐사체 부검 시 식도에서 검출된 벌씨) (기러기 및 오리류(청둥오리) 집단폐사)